##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36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이춘석·한병도·윤종군

윤준병 • 서영교 • 김윤덕

정준호 • 서미화 • 백선희

박선원 · 임호선 · 이연희

임미애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,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「농지법」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 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·보급, 우선구매 등 영농형

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편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) ① 「농지법」 제36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(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)을 위하여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- 1.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
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 발·보급,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
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2조의2(영농형 태양광발전사
	업 지원 등) ① 「농지법」 제
	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
	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형 태양
	광 발전사업(농지를 농작물 경
	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
	해당 농지에서 「신에너지 및
	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
	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태
	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
	는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
	것을 말한다)을 위하여 농지에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양광
	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
	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
	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
	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사
	용을 허가할 수 있다.
	<u>1.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</u>
	른 농업인
	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
	원으로 하여 도조례로 정하는

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
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
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기술
의 개발·보급, 영농형 태양광
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기의
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
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
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